

의안번호	2220058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6. 9. 11.
추계번호	26B3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 추가 (안 제2조)	30	30	30	30	30	150	3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등 관련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카.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추가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조(정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예산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¹⁾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아래 10개의 분야(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또한, 현행법²⁾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10개 분야)

연번	분야
1	에너지의 공급
2	먹는물의 생산 공정
3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4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5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6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7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8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9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10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개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예산(10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함

2)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예산 편성 내역

사업명	관련 사업 내용	편성 내역(2026 예산)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고영향 AI 확인을 위한 전문 위원회 운영 -고영향 AI 판단기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추진	- 30건(10개 분야별 3건) x 10백만원 = 300백만원* (분야별 30백만원) *고영향AI 확인 150백만원(30건x5백만원, 전문가검토 비, 회의실 임차, 소모품비 등), 판단기준 수립 및 가이 드라인 고도화 15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고영향 인공지능의 지정 분야 추가	30	30	30	30	30	150	30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등 관련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예산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기준 수립 등 관련 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